

창원지방법원 2022. 4. 21 선고 2021나5566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대한민국

변 론 종 결 2022. 3. 24.

판 결 선 고 2022. 4. 21.

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. 4. 9. 선고 2020가단884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B 임야 13,587㎡(이하 ‘이 사건 임야’라 한다)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96. 9. 19. 접수 제599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2쪽 14행의 “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”를 “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”로 고쳐 쓴다.

2. 판 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의 조부인 E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고[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C는 원고의 조부 E가 창씨개명을 한 이름으로 위 C와 원고의 조부인 E는 동일인이다], 이 사건 임야는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어서 귀속재산처리법에서 정한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,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, 이 사건 임야를 순차로 증여받은(E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부친인 F에게 증여하고, F은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다)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.

나. 구체적 판단

1)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,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(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4다50044 판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,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순차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

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진민희, 판사 하상제, 판사 장우영